

통상

전망

IMF지원하의 통상환경 전망(I)

국제부

목차

I. 세계경제 전망 및 최근의 통상환경

1.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2. IMF 금융지원의 주요내용
3. 통상측면에서의 영향

II. 국제무역관련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1. WTO
2. OECD
3. APEC

III. 주요 다자협상 현황과 전망

1. ITA(정보기술협정)
2. WCO 통일원산지
3. 투자이슈
4. 전자상거래
5. 무역과 환경
6. 뇌물방지규범
7. 무역과 경쟁정책
8. 규제개혁

IV. 1998년 미국 통상환경 전망

1. 미국경제 현황과 전망
2. 1998년 한미간 주요 통상문제
3. IMF 구제지원이 한미통상에 미치는 영향

V. 1998년 EU 통상환경 전망

1. EU경제 현황과 전망
2. 한·EU 반덤핑 현황과 전망
3. EU의 주요 통상이슈

I. 세계경제 전망 및 최근 통상환경의 급변

1.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① '98년의 세계경제 성장

○ 1997년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가 1998년에도 3.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 미국경제는 금리인상 등을 통한 경기조절정책이 예상되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잠재수준을 웃도는 2.5%내외가 예상된다.

○ EU경제는 1997년에는 예상보다 낮은 2.2%로 전망되나 1998년에는 대폭 절하된 통화 가치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6%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경제는 소비세 인상여파가 지속되면서 1998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2.6%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세계 경제환경

○ 1997년 4/4분기 이후 1998년 들어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998년부터 금융, 기본통신 등 UR 후속협상이 발효되고, 환경, 투자 등 다자간 협상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국제교역환경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간의 광역화 추세로 자유무역이 확산될 전망이다.

○ 동남아 등의 금융위기 문제

는 국제 금융기구 및 관련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 IMF금융지원의 주요내용

① 국내경제운용

○ 실질 GDP성장률이 98년에 1~2%로 감소, 물가상승률은 약 9%, 실업률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 통화정책 긴축기조, 시장금리 상승 허용,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인상, 기업 법인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확대 추진, 자본지출이나 용자규모 축소, 경상비용 절감 추진

○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융 부문의 추가적 시장개방 추진, 독립

적 금융감독 기관의 설립, 금융기관의 퇴출정책 시행 등 추진

-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내 금융기관의 우호적 인수-합병(M&A)에 동등한 조건하 참여허용, 증자사 외국사 참여는 100%까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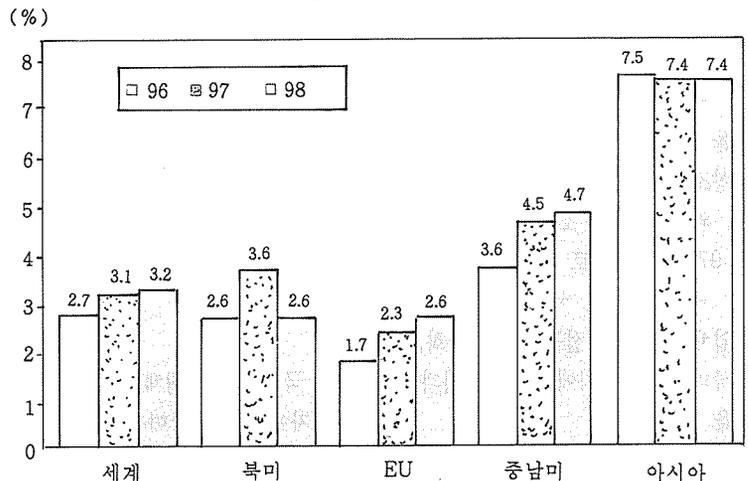
○ 독립적인 기업 외부감사 및 재벌의 통합재무제표 완전 공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 개선, 정책 금융 유지, 이자보조금은 예산에서 부담. 정부 보조금 지원과 세계 혜택을 개별기업의 구제를 위해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및 노동력의 용이한 재배치를 위해 새로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대외정책관련 사항

○ 무역관련 보조금, 제한적 수입허가 및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의 폐지 일정표 작성, 수입허가과정

세계 권역별 경제성장률



자료 : WEF, World Economic Outlook, '97년 8월

- 99년말까지로 예정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시기를 99년 6월로 앞당김

항 목	다변화 해당품목	비 고	주요 전자관련제품
전체 품목	88개	'98년 1월 현재	FDD, 칼라 TV, 무선전화기, VCR, 전기밥솥, 팩시밀리, 복사기 등
전자관련 품목	16개		

- 무역보조금 제도를 98년말 까지 폐지

수출손실 준비금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 1% 또 는 동사업의 소득금액의 50%를 손급처리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 상시 수출과 용역사업의 외화수입 금액의 1%내에서 산입
* 동 보조금 폐지시 외화수입금액(수출액)의 최대 2%를 손금계상 불가	

- 전자산업의 무역수지전망

(단위 : 백만 \$)

1997년			1998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41,700	29,659	12,041	46,623	30,501	16,122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EIAK) 전망

의 투명성 간소화 단계적 조치 시행

○ 주식시장 외국인투자한도의 확대, 외국의 국내금융기관 참여 확대 및 적대적 인수합병허용

- 외국인 주식총소유 상한선을 97년말의 50%에서 55%로 상향조정, 98년말에는 상한선 폐지, 외국 개인의 소유한도 7%에서 97년말 50%로 상향조정

- 외국인의 국내금융시장과 기업채권시장의 접근 제한 완화, 외국의 직접 투자에 관한 인가과정을 단순화

○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금융기관의 우호적 인수 및 합병 허용, 적대적 인수 관련 입법 조치

마련

3. 통상측면에서의 영향

① IMF양해각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제도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시행을 명기

② 국내경기의 침체와 경상수지의 흑자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의 증가와 수입억제에 따라 경상수지의 흑자 전

환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덤핑제소 등 통상마찰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③ 최근 국산품 애용 소비절약 운동 관련 예상 공세

○ 경기침체에 제기되는 국산품애용과 외제배격 등 소비절약 운동으로 인해 새로운 통상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 97년초 미국과 EU가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이 수입품 배격 운동으로 변질되고 정부가 이를 묵시적으로 조장한다고 문제삼은 바 있다.

○ IMF지원 이후 이러한 운동에 대해 외국업체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이 Moratorium 위기에 벗어나고, 한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할 3~4월경에는 미국, EU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 3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보고서, 4월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등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통상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국제기구의 통상현안

1.WTO

① 회원 및 총회

○ WTO는 199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체약국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1997년 현재 체약국 수는 140개국에 육박)

○ WTO는 종래 끝없는 무역 분쟁으로 치닫던 문제들을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쉽게 해결해 내게 되었다.

○ 반면에, WTO가 출범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관심이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간 무역질서의 형성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의 WTO의 협정 이행 검토 및 후속협상의 추진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새로이 등장한 주요 교역국과의 가입협상이 부진함으로써 WTO가 세계무역의 주요 관심사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관장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1998년 5월에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 출범 50주년 기념행사 및 WTO의 제2차 각료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WTO가 출범한 이후 공식적으로 열리는 두 번째 각료회의인 동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의 개시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② 각 위원회의 활동

○ WTO는 각국이 제시한 자유화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반덤핑 제도,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등 제도정비 상황을 통보 받고 이의 검토에 힘쓰고 있다.

○ 또한, UR 협상 타결 당시 미루어졌던 후속협상들 즉, 통일원산지 규정제정, 우회덤핑 방지 규정 제정 및 금융·기본통신·해운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협상을 벌인 바 있으며, 나아가 WTO는 UR 협상 당시에 부각되지 않았던 무역과 투자 및 경쟁정책·정부조달의 투명성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전시키고 있다.

- 97년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기본통신협정(Basic Telecom Agreement)이 계획대로 1998년 1월 1일에 발효되지 못했다. 이는 15개 조인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동 협정을 비준치 않았기 때문이다. WTO는 98년 1월 26일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공식발효일을 98년 2월 5일로 결정하였다.

○ UR 협정 이행법안에 대한 대부분의 통보 의무를 가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WTO에는 제재 또는 촉구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 새로운 통상이슈중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등에 관해서는 WTO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다.

○ 더욱이, 다자간 투자 규범(MAI), 무역과 부패 등 이슈는 지금까지 WTO 밖에서 거론되고 있을 뿐 WTO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WTO 출범 이후 계속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소위 Built In Agenda는 서비스 후속협상과 규범 제정 협상 등이 있다.

- 서비스 후속협상 중 금융서비스협상은 97년 12월에 타결되었으나, 기본통신, 해운 협상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후속협상이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과 우회덤핑 방지 규정 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협상에 대한 회원국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OECD

○ OECD에서는 UR 이후의 추가 무역자유화를 겨냥하여 논의의 범위(Scope) 및 방법(modalities)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21세기 세계경제통합을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 OECD 회원국들은 아직까지는 뉴라운드 출범 등과 같은 표현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추가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 향후 추가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농업, 금융 등 WTO의 기정의제(BIA, Built-in Agenda)와, 경쟁정책, 투자, 인터넷, 전자상거래, 환경 등의 뉴 이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는 있겠으나, UR 협상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타결이 가능한 이슈를 발굴하는 데에 우선적인 노력이 집중되리라고 본다.

○ 추가 무역자유화의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는 ITA 방식의 부문별 자유화, OECD의 부패나 MAI 방식의 복수국가간 협상, APEC 등의 지역간 추가 자유화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APEC

○ 1997년 APEC에서의 논의를 결산하는 회의가 밴쿠버에서 11월에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의 핵심내용은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이다.

— 완구에서 화학제품까지 9개의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를 선정하고,

— 이들에 대해 1998년 자유화 내용확정, 1999년 초부터 실행에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자발성의 원칙을 근거로 수산물, 임산물 등 일차산품에 대하여 불참의서를 표명하였다.

— 당면한 문제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세계경제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와 각국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간 상호지지를 통하여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분야와 일차산품 또는 단순 노동집약적인 분야들이 정치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우려된다.

○ APEC은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추진과 각국의 개별실행계획의 개선을 추구함에 따라 이전의 단순한 협력체로부터 협상체로서의 성격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해진다.

○ 정상들은 전자상거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데 합의하고,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내년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 베트남, 페루를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일기로 합의하여 APEC이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어느 정도 성격변화도 예상된다.

III. 주요 다자협상 현황과 전망

1. ITA(정보기술협정)

① ITA I

○ 추진배경: 미국이 중심이 되어 선진 4개국(Quad: 미국, 일본, EU, 캐나다)을 주축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무관세화를 통해 세계 무역자유화를 주도키 위해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97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무관세화를 추진한다.

○ 대상분야: 컴퓨터 하드웨어와 부분품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와 집적회로 및 부분품, 반도체 생산장비 및 검사장비, 정보통신장비, 광전자제품 등

○ 주요국의 관세양허 연장품목

국명	무세년도	품목수	비고
한국	2002-2004	13	통신(7), 컴퓨터(4), 반도체장비(1), 부품(1)
코스타리카	2001-2005	39	2000년 이후에도 무세년도까지 균
태국	2005	64	등인하
말레이시아	2003-2005	34	2000년 이후 무세년도 이전까지 고
인도	2003-2007	114	관세 유지
인도네시아	2003-2005	30	

* ITA 대상품목의 범위 확대

분 야	품목수	분 야	품목수
의료기기	2	기초화합물	13
광학기기	6	화학제품	29
전 선 류	8	금속물	11
증전기	10	전자부품	13
일반기계	41	일반전자기기	8
계측기기	20	영상기기	4
반도체제조장비	4	통신기기	7
우주항공기계	2	계	178

* WTO에 제출한 추가품목(전자관련제품)

분 야	품목수	분 야	품목수
전자부품	68	통신제품	4
가전제품	38	정보제품	4
산업전자	7	의료장비	1

○ 주요국가의 입장 : 미국은 ITA 대상품목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ITA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ITA 대상품목의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서 ITA 추진에 동조하고 있고 EU는 관세 무세화와 함께 비관세장벽 제거도 동시에 희망하고 있다.

② ITA II

○ ITA II 논의 경과 : '96.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료 선언』 채택, '97. 2. 유예품목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97. 7. 1부터 인하시차.

-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EC 등 43개국

- 대상품목, 반도체, 통신장비, 컴퓨터 등 203개 품목

- 내 용 : '97. 7. 1~2000. 1. 1까지 4단계에 걸쳐 관세철폐

○ ITA II에 대한 미산업계의 제안내용

- 관세철폐 가속화(ITA 및 ITA II 대상품목중 관세인하 일정상 세율이 3%이하에 도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98. 1월부터 무세화 적용)

- ITA 대상품목의 범위 확대 : 기존 203개 품목에 맞테리, 디지털 카메라, 반도체 제조장비 등 178개 품목 추가

- 인터넷 상거래 무관세화 : 인터넷 구축장비로서 ITA I에 추가된 포괄적인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디지털화된 내용물(digitized content)에 대한 관세철폐

- 비관세장벽 제거 : 각국의 ITA 대상품목에 대한 각종 다양한 규제의 표준화(One Standard - One test) 요. 따라서 ITA 논의 적합성평가협정(Conformm-

ity Assessment Agreement) 체결로 표준화 달성

- 관세분류체계의 불일치 문제 : 관련 향후 사례를 발굴하여 추후 제안

○ 품목확대와 관련하여 각국이 WTO에 추가품목 리스트 제출

- 제출국('98. 1. 22 현재) :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대만 캐나다, EU, 스위스, 싱가포르, 터키, 이스라엘, 필리핀, 노르웨이 등 13개국)

- 리스트중 전자관련 제품은 총 122개 품목이다.

○ 향후 일정

- 1997. 12. 31 ITA 품목 추가 관세양허안 및 기술적 제품 설명제출 1998. 1. ~1998. 3. 31 상기 제출서류에 대한 참여국 간 협의

- 1998. 6. 30 ITA 선언문의 Annex Attachment A or B의 수정여부 검토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Committee of Participant가 새로운 품목 리스트 작성

- 1998. 9. 1 신규 리스트에 대한 양허안 제출

- 1998. 9. 15~1998. 9. 30 각국 양허안 검토

- 1999. 1. 1 Committee of Participant의 양허안 검토결과를 기존 WTO 양허안의 수정안으로 WTO에 제출

2. WCO 통일원산지

○ 1998년 7월을 타결시한으로 통일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여

WTO 원산지규정 협정 Annex III에 부속키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WCO(세계관세기구) 및 WTO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 기본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 국가내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는 당해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2개국 이상이 연관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 협상의 핵심사항은 실질적 변형에 대한 정의 여부인데 기본적으로 실질적 변형은 세번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 기준과 공정기준을 보완키로 하였다.

○ UR과정중 합의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포함한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제품별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며 그 적용범위(scope)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3. 투자이슈

○ 기업활동의 세계화에서 가

장 중요한 형태로 고려되는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OECD가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협상을 주도

— WTO에는 무역관련투자협정(TRIMs) 등이 있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이 21세기에 있어서 해외투자를 규정하는 최고의 국제적인 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자간 투자협정은 1998년 4월을 타결목표로 하여 각국이 제시하는 유보안을 중심으로 OECD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1991년부터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CMIT)와 다국적기업위원회(CIME)를 중심으로 투자의 경제적인 효과, 협정의 내용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한 이후 1995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1997년에 목표연도를 1998년으로 연기하였다.

— 다자간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 각국의 투자제도를 자유화하고 ②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하며, ③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과정을 마련한다는 세부적으로 요약될 수 있

다.

— 또한, 추가적 의무사항으로 핵심인력(투자관련 임원, 관리자, 전문가) 이동의 자유화, 민영화시 외국투자자 참여보장, 외국투자자 대한 이행의무(수출이행, 국산부품사용, 국내 재화 및 용역 사용, 국제수지 균형) 부과금지, 독점기업의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최혜국대우, 내국민 대우 그리고 투명성의 세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대국가 분쟁해결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을 강화함으로써 이 협정의 강제성을 높였다.

○ 특히, 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외직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지분, 주식, 채권, 경영상의 계약, 라이선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 현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다자간투자협정에서 유보할 계획이었던 적대적 M&A, 금융 개방 등이 다수 포함된다.